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4. .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42호, 시행 2020. 7. 1.)됨에 따라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제19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11조제4항 관련)”을 “(제11조제5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u> <u>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u>
④·⑤ (생략)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u>제11조제4항</u> 및 별표 3에 따른 담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4. ~ 6. (생략) ② (생략)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11조제5항</u> ----- ----- -----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